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4. 4. 14.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4년 4월 3일
- 나. 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- 다. 회부일자 : 2014년 4월 9일 회부
- 라. 상정일자 : 제18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(2014. 4. 11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감사담당관 채재묵)

가. 제안이유

- 「공직자윤리법」이 개정(2011.10.30)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 심사 대상, 수당 등 관련 개정내용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신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 대상 추가 (안 제3조제1항3호)
 -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업무취급 승인
- 심사기준 근거 신설 (안 제3조의2)
- 수당 근거 규정 명확화 (안 제8조)
-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법률용어 순화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김기영)

-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공직자윤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1년 10월 30일

개정·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, 운영 등에 관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2조에 3명의 위촉대상 위원에 “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”을 포함하도록 하였고,
-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기능에 “취업승인” 외에 “취업여부의 확인”과 “업무취급의 승인” 등을 추가하여 위원회 기능을 확대하였고,
-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위원회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는 심사기준의 근거를 마련하였고,
- 안 제8조에 소속 공무원 및 구의원인 위원은 수당 및 여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으며,
-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음.

○ 이 개정 조례안은 「공직자윤리법」 제9조와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우리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·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사·결정 사항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업무취급의 승인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, 위원회의 심사·결정을 위한 필요한 기준을 의결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,

○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「공직자윤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였고, 서울시로부터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법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279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4. 4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공직자윤리법」이 개정(2011.10.30)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 심사 대상, 수당 등 관련 개정내용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신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 대상 추가 (안 제3조제1항3호)

-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업무취급 승인

나. 심사기준 근거 신설 (안 제3조의2)

다. 수당 근거 규정 명확화 (안 제8조)

라.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법률용어 순화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공직자윤리법」 제9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협의사항

(1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(2) 부패영향평가 : 평가실시(의견없음)

(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실시(의견없음)

라. 기 타

(1) 입법예고(2014.3.6.~2014.3.26, 20일간)결과 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”를 “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”로, “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 시행에”를 “운영에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, “5인”을 “5명”으로, “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청장”을 “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”으로, “위촉 또는”을 “위촉하거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3인”을 “3명”으로, “또는”을 “및”으로, “자 중에서 위촉한다”를 “사람 또는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2인”을 “2명”으로, “영등포구의회”를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”로, “영등포구”를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”로, “위촉 또는 임명한다”를 “위촉 또는 임명”으로 한다.

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이”를 “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회에서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3인”을 “3명”으로 하고, “선임하여야 한다”를 “선임”으로, 같은 항 제2호 중 “2인”을 “2명”으로 하며, “선임하여야 한다”를 “선임”으로 한다.

제2조제3항 중 “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제2호에 따라”로, “구의회의장의”를 “구의회의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의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
2.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

3.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 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
4.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

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소속”을 “소속 공무원 중”으로, “공무원과”를 “공무원 및”으로 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심사기준) 위원회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심사·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.

제4조제1항 중 “1차에 한하여”를 “한 차례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소속공무원”을 “구 소속공무원”으로, “제1항의 규정에”를 “제1항에도”로, “의회의원”을 “구의회 의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”으로, “임기으로”를 “기간으로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통할한다”를 “총괄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위원장이 사고가 있을”을 “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3분의 2”를 “3분의2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법 제8조제7항에 따른”으로, “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법 제8조제12항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

제6조제2항제3호 중 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법 제22조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법 제24조, 제24조의2,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,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

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항에 관하여는”을 “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위원 본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

제6조제4항 중 “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3항에 따라”로, “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”을 “재적 위원수 계산에서”로 하며,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등을 행하게”를 “등을”로, “둘 수 있다”를 “둔다”로 한다.

제8조 중 “위원회의 위원장, 부위원장, 위원에 대하여는”을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 및 구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”으로, “범위 안에서 수당, 여비 기타”를 “범위에서 수당, 여비 그 밖에”로 한다.

제9조 중 “것”을 “사항”으로, “운영에 관하여”를 “운영에”로, “규정으로 정한다”를 “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”를 “규정한 사항 이외에 시행에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공직자윤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<u>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<u>위촉 또는 임명한다.</u></p> <p>1. <u>3인</u>의 위원은 법관,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.</p> <p>2. <u>2인</u>의 위원은 영등포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 의원 1명과 영등포구 소속공무원(이하 “구 소속공무원”이라 한다) 1명으로 <u>위촉 또는 임명한다.</u></p> <p>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<u>위원이 호선한다.</u></p> <p>1.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<u>3인</u>의 위원 중에서 <u>선임하여야 한다.</u></p> <p>2.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<u>2인</u>의 위원 중에서 <u>선임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<u>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-</u> ----- <u>운영에</u>----- -----.</p> <p>제2조(구성) ① ----- ----- <u>1명</u>----- <u>5명</u>----- ----- <u>각 호에 따라</u> <u>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</u> ----- ----- <u>위촉하거나</u> -----.</p> <p>1. <u>3명</u>----- <u>및</u> -----<u>사람 또는</u> <u>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</u> <u>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</u> <u>중에서 위촉.</u></p> <p>2. <u>2명</u>-----<u>서울특별시 영등포구</u> <u>의회</u>-----<u>서울특별시</u> <u>영등포구</u>----- ----- <u>위촉 또는 임명.</u></p> <p>② -----<u>다음</u> <u>각 호에 따라 위원회에서</u>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3명</u>----- -----<u>선임.</u></p> <p>2. ----- <u>2명</u>----- -----<u>선임.</u></p> <p>③ <u>제1항제2호에 따라</u>-----</p>

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회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.

제3조(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·결정한다.

1. 삭제<2007.06.01>
2.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
3.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
4.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
5.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

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·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

2. (생략)

<신설>

제4조(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) ① 위원장·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② 구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

----- 구의회 -----

제3조(기능) ① -----

1.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
2.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
3.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 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

<삭제>

4.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

② ----- 각 호 -----.

1. ---소속 공무원 중--- 공무원 및-----

2. (현행과 같음)

제3조의2(심사기준) 위원회는 제3조 제1항에 따른 심사·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.

제4조(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) ① -----

----- 한 차례만 -----

② ----- 구 소속공무원 -----
----- 제1항 -----

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, 구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.

③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제5조(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.

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위원회의 회의 등) ① (생략)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1.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의 승인
2.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의 조치
3.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
4.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

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

에도-----구의회 의원-----

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-----

----- 기간으로 -----

제5조(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) ① --

-----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-----.

제6조(위원회의 회의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3분의2 -----

1.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 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

2.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

3. 법 제22조에 따른-----

4. 법 제24조, 제24조의2,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,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

③ -----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-

회의 심사·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.

1. (생략)

2.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

3. (생략)

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·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.

〈신설〉

제7조(위원회의 간사 등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8조(수당 등) 위원회의 위원장·부위원장·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·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위원회의 운영규정)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10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공직자윤리법 시행령」 및 「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위원 본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

3. (현행과 같음)

④ 제3항에 따라-----

----- 재적 위원수 계산에
서-----.

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

제7조(위원회의 간사 등) ① -----
----- 등을

----- 둔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수당 등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 및 구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----- 범위에서 수당·여비 그 밖에 -----.

제9조(위원회의 운영규정) -----
-----사항 ----- 운영에
----- 의결을
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0조(준용) ----- 규정한 사항
이외에 시행에-----

-----.